

“의료 페디큐어”에 대한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설명서

2009년 3월 2일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Board)는 “의료 페디큐어”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몇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록 Board가 의료 페디큐어를 정하거나 규제하지 않더라도, 매니큐어 산업은 Board가 관리하며,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시설에서 매니큐어 서비스가 실행될 때 Board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니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사무실은 Board가 발급한 유효한 시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사무실의 매니큐어 미용사는 Board가 발급한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무실의 매니큐어 미용사는 의료 전문가와 같이 Board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oard의 법률과 규정에 정의된 매니큐어 미용사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의료 사무실” (예, 족부 사무실, 병원, 진료소 등)로 인정된 살롱이나 시설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면허 소유 매니큐어 미용사는, 모든 사람의 네일 깎기, 자르기, 연마, 채색, 턴팅, 클렌징, 또는 매니큐어링 등의 네일케어 실습 또는 모든 사람의 손이나 발의 마사지, 클렌징, 또는 가꾸기를 포함한 매니큐어 미용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면허소유 매니큐어 미용사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면도날 도구나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각질 제거는 매니큐어 미용사의 업무 영역 내에 있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매니큐어 미용사가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